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2-33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(주)KB금융지주
임 원	-
직 원	-

2. 조치내용

- 「지배구조법」 제10조, 제11조, 제43조에 따라 ‘임원 겸직 사전 승인 절차 누락’에 대하여 (주)KB금융지주에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조치

제재대상	신분제재		금전제재	
	금감원	금융위 심의	금감원	금융위 심의
(주)KB금융지주	-	-	과태료 3백만원 부과	과태료 3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

- 「지배구조법」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
 - KB금융지주는 소속 ●●● 부사장이 KB손해보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(2021.◆.◆.~)하면서 푸르덴셜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를 추가로 겸직(2021.▲.▲. ~ ▼.▼.)*함에 따라 KB손해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 간 형성되는 겸직관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**

- * KB금융지주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전승인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(2021.▲.◆.) 즉시 검직대상자 본인(●●● 부사장) 및 푸르덴셜생명보험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, 대상자는 동일자로 푸르덴셜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직 의원사직
- ** KB금융지주 → KB손해보험, KB금융지주 → 푸르덴셜생명보험 검직으로 형성되는 KB손해보험 ↔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삼각검직 관계에 대해서 원 소속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어야 함 (2016.10월 「지배구조법 법률 설명서」 ‘32. 임직원의 검직시 보고의 주체’, 2017.8월 「금융지주회사 등의 업무위탁 및 임직원 검직제도 해설」 참조)

나. 근거법규

- 「지배구조법」 제10조(검직제한), 제11조(검직 승인 및 보고 등), 제43조(과태료)
-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0조(검직허용), 제11조(검직 승인 및 보고), 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, 제3항, [별표3])